

[제 2 차 개정안]

工事適格審査 細部基準

2009. 12. 24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2006. 11. 17제정

2007. 08. 17개정

2009. 12. 24개정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적격심사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수시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을 통해 제공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 3 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서의 처분장관련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따로 운용한다.
-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③ 각 공사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④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금액의 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평가한다.

제 4 조 (심사자료 제출)

-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적격심사대상자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공사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별첨양식에 따라 적격심사신청서류 2부(원본 1, 사본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

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보완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심사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 할 공사, 하도급 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조건 등이 하수급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 선정된 하수급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방법)

① 적격심사 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는 별표의 항목별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항목별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공동수급체의 심사)

입찰공고문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은 별지^㉔와 같다.

제 7 조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한 결과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95점, 100억원 이상은 92점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 될 수 있는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결과를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한다.

제 8 조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공동수

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9 조 (재심사)

① 제7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 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 10 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와 같이 처리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발주자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 11 조 (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적격심사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심사항목별로 평가한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 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

하여 산정한다.

③ 심사자료중에서 관련협회에서 신고된 내용을 일정금액미만 단위로 절사한 경우로서 절사한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에 의하여 절사한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한다.

④ 적격심사항목중 시공경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기술자보유상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평가하고,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입찰가격은 계약담당부서에서 평가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7. 8. 20 이후 입찰 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2.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및 대표자의 소재 및 거주기간 심사시 배점한도 적용기간을 2010. 1. 1부터 5년 이상으로 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0. 01. 01이후 입찰 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별표 종합>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1. 일반건설공사

추정가격 기준 (이하 동일함)

심사분야 (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300억미만 100억이상	100억미만 70억이상	7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수 행 능 력	시공 경험	㉔ 일정기간 수행실적	12	15	10	10	10		
		㉕ 기술능력	12						
		㉖ 시공평가결과	2						
	㉗ 경영 상태	부채비율		7	7	7	4	4	
		유동비율		6	6	6	4	4	
		영업기간		2	2				
		소 계	14	15	15	13	8	8	
	㉘ 신인도		(±1.2)	(±0.9)	(±1)	(±1)	(±1)	(±1)	
	수행능력 소계		40	30	25	23	18	8	
	㉙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14	10	2	5			
㉚ 자재및인력조달가격 적정성		16	10						
㉛ 지역업체와공동수급체구성				3					
㉜ 지역소재 영업기간					2	2	2		
㉝ 수행 결격여부 (기술자보유상태)				(-10)	(-10)	(-10)	(-10)		
입찰가격외 평가		70	50	30	30	20	10		
입찰 가격 평가		30	50	70	70	80	9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별표 종합>

2. 일반건설공사의외 공사 (그 외 공사)

심사분야 (항목)		㉗	㉘	㉙	㉚	㉛	
		100억미만 50억이상	50억미만 6억이상	6억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수 행 능 력	㉜ 시공 경험	일정기간 수행실적	20	15	12	10	
	㉝ 경영 상태	부채비율	7	7	7	4	4
		유동비율	7	6	6	4	4
		영업기간	3	2	2		
		소 계	17	15	15	8	8
	㉞신인도	(±1)	(±1)	(±1)	(±1)	(±1)	
	수행능력 소계	37	30	27	18	8	
㉟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3					
㊱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3			
㊲지역소재 영업기간					2	2	
입찰가격외 평가		50	30	30	20	10	
입찰 가격 평가		50	70	70	80	90	
계		100	100	100	100	100	

별표 ①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심사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일정기간 수행실적)	12	별지 ㉗
	기술능력	12	별지 ㉘ 평점합계의 12/45
	시공평가결과	2	별지 ㉘ 평점의 2/10
	경영상태	14	별지 ㉙
	신인도	±1.2	별지 ㉚ 평점합계의 40/100
	수행능력 배점한도	40	PQ심사대상공사는 PQ제출서류로 평가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14	별지 ㉛ 평점합계의 14/10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16	별지 ㉜ 평점합계의 16/10
입찰가격 평가		30	아래 평점산식 참조 낙찰하한율 79.995%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30 - |(88/100 - \text{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별표 ②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7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심사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일정기간 수행실적	15	별지 ㉓
	경영상태	부채비율	7	별지 ㉔
		유동비율	6	
		영업기간	2	
	신인도		±0.9	별지 ㉕ 평점합계의 30/100
	수행능력 배점한도		3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10	별지 ㉖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10	별지 ㉗
입찰가격 평가			50	아래 평점산식 참조 낙찰하한율 85.495%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50 - 2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별표 ③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심사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일정기간 수행실적	10	별지 ㉓
	경영상태	부채비율	7	별지 ㉔
		유동비율	6	
		영업기간	2	
	신인도		±1	별지 ㉕
	수행능력 배점한도		25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2	별지 ㉖ 평점합계의 2/10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3	별지 ㉗
수행능력 결격여부 (기술자 보유상태)			(-10)	별지 ㉘
입찰가격 평가			70	아래 평점산식 참조 낙찰하한율 86.745%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70 - 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별표 ④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심사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일정기간 수행실적	10	별지 ㉑
	경영상태	부채비율	7	별지 ㉒
		유동비율	6	
	신인도		±1	별지 ㉓
	수행능력 배점한도		23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5	별지 ㉔ 평점합계의 5/10
지역소재 영업기간 평가			2	별지 ㉕
수행능력 결격여부 (기술자 보유상태)			(-10)	별지 ㉖
입찰가격 평가			70	아래 평점산식 참조 낙찰하한율 86.745%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70 - 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별표 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심사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일정기간 수행실적	10	별지 ㉓
	경영상태	부채비율	4	별지 ㉔
		유동비율	4	
	신인도		±1	별지 ㉕
	수행능력 배점한도		18	
지역소재 영업기간 평가			2	별지 ㉖
수행능력 결격여부 (기술자 보유상태)			(-10)	별지 ㉗
입찰가격 평가			80	아래 평점산식 참조 낙찰하한율 87.745%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80 - 20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별표 ⑥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건설공사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심사방법)
수행 능력 평가	경영상태	부채비율	4	별지 ㉔
		유동비율	4	
	신인도		±1	별지 ㉕
	수행능력 배점한도		8	
지역소재 영업기간 평가			2	별지 ㉖
수행능력 결격여부 (기술자 보유상태)			(-10)	별지 ㉗
입찰가격 평가점수			90	아래 평점산식 참조 낙찰하한율 87.745%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90 - 20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별표 ⑦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그 외 공사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심사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일정기간 수행실적	20	별지 ㉗
	경영상태	부채비율	7	별지 ㉘
		유동비율	7	
		영업기간	3	
	신인도		±1	별지 ㉙
	수행능력 배점한도		37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13	별지 ㉚ 평점합계의 13/10
입찰가격 평가			50	아래 평점산식 참조 낙찰하한율 85.495%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50 - 2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별표 ⑧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6억원 이상인 그 외 공사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심사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일정기간 수행실적	15	별지 ㉓
	경영상태	부채비율	7	별지 ㉔
		유동비율	6	
		영업기간	2	
	신인도		±1	별지 ㉕
	수행능력 배점한도		30	
입찰가격 평가			70	아래 평점산식 참조 낙찰하한율 86.745%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70 - 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별표 ⑨

추정가격 6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그 외 공사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심사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일정기간 수행실적	12	별지 ㉓
	경영상태	부채비율	7	별지 ㉔
		유동비율	6	
		영업기간	2	
	신인도		±1	별지 ㉕
	수행능력 배점한도		27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3	별지 ㉖
입찰가격 평가			70	아래 평점산식 참조 낙찰하한율 86.745%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70 - 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별표 ⑩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그 외 공사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심사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일정기간 수행실적	10	별지 ㉑
	경영상태	부채비율	4	별지 ㉒
		유동비율	4	
	신인도		±1	별지 ㉓
	수행능력 배점한도		18	
지역소재 영업기간 평가			2	별지 ㉔
입찰가격 평가			80	아래 평점산식 참조 낙찰하한율 87.745%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80 - 20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별지 ⑪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그 외 공사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심사방법)
수행 능력 평가	경영상태	부채비율	4	별지 ㉔
		유동비율	3	
	신인도		±1	별지 ㉒
	수행능력 배점한도		7	
지역소재 영업기간 평가			2	별지 ㉑
입찰가격 평가			90	아래 평점산식 참조 낙찰하한율 87.745%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90 - 20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시공경험 세부평가기준

1. 일정기간 수행실적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I,II**를 선택 적용

입찰방법 I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단, 평점상한은 배점) ※ 당해공사의 특성에 따라 ㉓와 ㉔를 선택적용	
	㉓금액(부가세포함)기준의 경우	㉔규모기준의 경우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단일공사실적 (주2 참조)	점수 = 배점 × 실적계수 * 실적계수 ① 100억원 이상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2) ② 10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 ③ 3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0.75)	점수 = 배점 × 실적계수 * 실적계수 ① 100억원 이상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규모 ÷ (기준규모 × 2) ② 10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규모 ÷ (기준규모 × 1) ③ 3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규모 ÷ (기준규모 × 0.75)

입찰방법 II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단, 평점상한은 배점)
최근 3년간 (100억 이상은 5년간) 당해공사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누계금액 * 실적은 부가세 포함 (주3 참조)	점수 = 배점 × 실적계수 * 실적계수 ① 100억원 이상의 경우 = 업종별 실적의 누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2.5) ② 100억원 미만의 경우 = 업종별 실적의 누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2) ③ 70억원 미만의 경우 = 업종별 실적의 누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5) ④ 30억원 미만의 경우 = 업종별 실적의 누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 ⑤ 3억원 미만의 경우 = 공사실적(당해업종 구분없음)의 누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0.5)

주1) 공통사항

1.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최근 몇 년간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당해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당해업체가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하는 경우 "최근 몇 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관련협회에서 등록 실적관리하는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 이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5. 필요한 경우 기성실적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주2)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방법 I]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란 한수원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규모 또는 양) 중에서 한수원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1건 공사의 하한규모(규모 또는 양)를 말함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 또는 양)"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다.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보합평가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협회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의 증명서로 심사가 가능하다.

나. 국외공사실적인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 또는 증명서에 따른다.

다.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라. 하도급공사 :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 별지서식에 따른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단, 면세사업자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음

나.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도급액 및 관(지)급자채대금)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마. 대한민국외(外)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제출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실적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함

주3)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입찰방법 Ⅱ]

(최근 3/5년간 당해공사 업종별 실적 평가)

1. "평가대상업종"이란 한수원이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공사 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등

2. 평가대상업종은 관련법령 내(內)의 업종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비율에 의하여 최근 3년간(100억 이상인 경우 5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예) 토목, 조경업종 관련 공사인 경우 토목과 조경의 비율에 따라 실적평가

3. 서로 다른 법령상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內)의 모든 업종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른 법령상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공사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예) 토목, 조경 및 전기공사 업종이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가능

4. 업종별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그 비율에 따라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5. 업종별 실적금액은 발주자의 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7.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함.

(토목, 건축, 전문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8. 추정가격 10억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미만) 공사인 경우는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증명서로 인정)에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금액(관련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실적을 중복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

기술능력항목 평가표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당해 공사와 동일(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4.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4.0 11.9 9.8 7.7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C. 10인 이상	10.0 7.8 5.5
	시공지원 기술자	6.0	A. 4인 이상 B. 4인 미만	6.0 3.3
나. 신기술개발 . 활용 실적	신기술 개발건수	1.0	A. 2건 이상 B. 1건	1.0 0.6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0	A. 60억원 이상 B. 60억원미만10억원이상 C. 10억원미만1억원이상 D. 1억원 미만	3.0 2.6 2.2 2.0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3.0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5년 이내 시공실적 C. 7년 이내 시공실적 D. 10년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6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200% 이상 B.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8.0 7.1 6.2 5.3 4.4

시공평가결과항목 평가표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0	A. 90점 이상 B. 85점 이상 C. 80점 이상 D. 75점 이상 E. 70점 이상	10.0 8.8 7.7 6.6 5.5

별지 ④ [기술능력]

주)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며,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이하 경력기술자 라 한다),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되거나, 사전심사신청자가 제출(등록)한 자료로 평가한다.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 경력)	
등 급	계수	경 력	계수	경 력	계수
특급기술자	1.0	3년 이상	1.0	2년 미만	1.0
고급기술자	0.75	5년 이상	1.5	2년 이상	1.1
중급기술자	0.5	10년 이상	2.0	5년 이상	1.3
초급기술자	0.25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1건 공사가 복합 사전심사대상 공사인 경우 경력기술자인 동일인은 각 사전심사대상공사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2. '나'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활용실적 평가 시 신기술 미보유업체에 대하여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환경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법인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을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최근연도까지의 보호기간동안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3. '다'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당해 사전심사에서 제출한 동일실적(유사실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사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라'목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은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별지 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5. 시공평가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나 준설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당해입찰에서 제출한 시공경험(동일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위의 나에서 규정하는 시공경험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른 시공평가 대상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70점을 적용. 다만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된 공사인 경우에는 80점 적용

2)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을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

3) 시공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라. 위의 나의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마. 시공평가 점수는 위의 나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6. 합병 등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한다.

7. 공동도급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가"목의 기술자 보유평가에 있어서,

1) 해당공종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주)1-나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일반기술자와 시공지원기술자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자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8. 기술능력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이외의 심사항목과 시공평가결과 항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재무비율에 따른 경영상태 세부평가기준

1. 일반건설공사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등 급	100억미만	70억미만	30억미만	10억미만	2억미만
		70억이상	30억이상	10억이상	2억이상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비율	A. 50% 미만	7.0	7.0	7.0	4.0	4.0
	B. 75% 미만	6.3	6.3	6.3	3.6	3.6
	C. 100% 미만	5.6	5.6	5.6	3.2	3.2
	D. 125% 미만	4.9	4.9	4.9	2.8	2.8
	E. 125% 이상	4.2	4.2	4.2	2.4	2.4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비율	A. 150% 이상	6.0	6.0	6.0	4.0	4.0
	B. 120% 이상	5.4	5.4	5.4	3.6	3.6
	C. 100% 이상	4.8	4.8	4.8	3.2	3.2
	D. 70% 이상	4.2	4.2	4.2	2.8	2.8
	E. 70% 미만	3.6	3.6	3.6	2.4	2.4
다. 최근년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75% 미만					
	C. 100% 미만					
	D. 125% 미만					
	E. 125% 이상					
라. 최근년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마. 최근년도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바. 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체평균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사.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아. 영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5년 이상	2.0	2.0			
	3년 이상	1.8	1.8			
	3년 이상	1.8	1.8			
	3년 미만	1.6	1.6			
배점한도		15	15	13	8	8

2. 일반건설 외(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기타)공사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등 급	100억미만	50억미만	6억미만	3억미만	1억미만
		50억이상	6억이상	3억이상	1억이상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비율	A. 50%미만	7.0	7.0			
	B. 75%미만	6.3	6.3			
	C. 100%미만	5.6	5.6			
	D. 125%미만	4.9	4.9			
	E. 125%이상	4.2	4.2			
	A. 100%미만			7.0	4.0	4.0
	B. 130%미만			6.3	3.6	3.6
	C. 160%미만			5.6	3.2	3.2
	D. 190%미만			4.9	2.8	2.8
	E. 190%이상			4.2	2.4	2.4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비율	A. 150%이상	7.0	6.0			
	B. 120%이상	6.3	5.4			
	C. 100%이상	5.6	4.8			
	D. 70%이상	4.9	4.2			
	E. 70%미만	4.2	3.6			
	A. 100%이상			6.0	4.0	4.0
	B. 90%이상			5.4	3.6	3.6
	C. 80%이상			4.8	3.2	3.2
	D. 70%이상			4.2	2.8	2.8
	E. 70%미만			3.6	2.4	2.4
다. 영업기간	5년 이상	3.0				
	3년 이상	2.7				
	3년 미만	2.4				
	3년 이상		2.0	2.0		
	1년 이상		1.8	1.8		
	1년 미만		1.6	1.6		
배점한도		17	15	15	8	8

주1) 공통사항

1.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에 의하되, 재무제표 등에 따른 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우' 중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선택한(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선택한다)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주2) 재무비율 평가방법

1. 경영상태 평가시의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년도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이하 "직전 회계년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따라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당해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년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한다.
5. 당해 회계년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단,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하며,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6. 당해 회계년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년도 정기결산서 합(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회계년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7. 당해 회계년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년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8.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제5호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10.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1.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12.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주3) 영업기간 평가방법

1. 영업기간의 평가는 공사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따른다.

2. 보유한 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 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주4)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 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평가하고자 하는 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서로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 평점방법 : 당해업체의 해당등급별 평점 × 배점한도/35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 이상	A2+ 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4.7
A-	A2-	A-에 준하는 등급	34.4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4.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3.2
BB+, BB0	B+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1.6
B+, B0, B-	B-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CCC+ 이하	C 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신인도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평가등급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포함)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2.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3.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 부과처분 1회
	-2.0	과징금 부과처분 2회
	-3.0	과징금 부과처분 3회 이상
4.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상습 범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2.0	통보받은 자
5.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2.0	평균환산재해율 0.25배 이하
	1.7	평균환산재해율 0.40배 이하
	1.3	평균환산재해율 0.55배 이하
	1.0	평균환산재해율 0.70배 이하
	0.7	평균환산재해율 0.85배 이하
	0.3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이하
	0.0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초과
6.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처분 1회
	-1.0	과태료처분 2회 이상
7.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0.2/건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8.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0	2회 이상 받은 자
9. 건교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부실벌점)	-0.2	1점 이상 2점 미만
	-1.0	2점 이상 10점 미만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20점 미만
	-5.0	20점 이상
10.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	-1.0	한수원에서 제재처분을 받은 자
11. 최근 2년간 한수원에서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익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 무혐의처분/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통보한 경우에 한한다.	-0.5	1회 이상 서면 주의 통보
	-0.7	대외기관의 무혐의처분
	-1.0	사법기관의 무혐의결정
	-0.5	5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0.7	10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1.0	당해업체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해제한 경우

별지 ㉔ [신인도]

주)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1.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시 동일 심사 항목 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당해 발주 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 적용기간 이내에서 당해 사실에 대한 처분일(처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간 만료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격심사 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가 각각 승계한 것으로 본다.
7.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 +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 +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8. 심사항목 1~9 중 감점항목은 평가서류 미제출시 최대 감점을 적용한다.
9. 신인도 평가 결과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일반건설공사 70억원 미만 및 그 외 공사는 심사항목 10, 11만 평가한다.
11. 신인도점수 평점방법

구 분	일반건설공사			그 외 공사
	300억 미만 100억 이상	100억 미만 70억 이상	70억 미만	
평가산식	평점 × 40/100	평점 × 30/100	평점 × 100/100	
배점한도	±1.2	±0.9	±1	

하도급 관리 계획서

“예시”

공 사 명 :

(금액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 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비 고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자재비, 하도급낙찰률)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 (인)	○○군 ○○면	토공사업 (3,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200,000	150,000	10,000 (75%)
				배수공	1 식	10,000	7,000	2,000 (70%)
○○건설(주) 김갑동 (인)	○○군 ○○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	1 식	400,000	380,000	50,000 (95%)
입찰가격(A) : 1,000,000				합 계		610,000 (B)	537,000 (C)	
				하도급 비율(B/A) : 61%		하수급금액 비율(C/B)	88%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 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관리 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인)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하도급할 공사 및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산출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3.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금액(또는 도급한도액)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4.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끝.

별지 ㉞[하도급]

주1) 작성요령 등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2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업종별로 작성한다.
4.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5.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비를 제외한다.
6.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7. 비교란에는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자재비와 당해 공사 하도급계약의 낙찰률(백분율 계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을 명시하여야 한다.
8. 하도급 관리 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1차 기성시까지 제출한다.
9. 발주자의 사전승인없이 하도급 관리 계획서 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10.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를 말한다.
11.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금액이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내역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④[하도급]

주2) 평가방법

1. 하도급비율 (배점 3점)

- 입찰가격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하도급 비율	40% 이상	30% 이상
평 점	3	2

2. 지역업체 하도급률 (배점 4점)

- 하도급 할 전체금액 대비 지역소재 업체에 하도급 할 금액 비율

평가등급 \ 추정가격	300억미만 (㉞와 ㉜중 택일)	100억이상	100억미만 70억이상	70억미만 10억이상
50% 이상				4
45% 이상			4	3
40% 이상	4		3	2
35% 이상	3	4	2	
30% 이상	2	3		
25% 이상		2		
(발전소주변지역관할) 대상지역범위 ¹⁾	㉞광역시/ 도	㉜시/ 군/ 구	시/ 군/ 구	

※ 읍면동 지역범위 소재업체에 하도급시 1점×(읍면동분/전체지역업체분)을 배점한도(4점)내 추가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 (배점 3점)

-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평가등급	87% 이상	83% 이상	80% 이상
평 점	3	2	1

1) 입찰공고시는 구체적 대상지역범위를 명시하기 바람

대상지역범위	고리원자력	영광원자력	월성원자력	울진원자력	한강수력발전
읍/면/동	장안일광서생온양	홍농법성백수상하	양남,양북,감포	북면,죽변,울진	신동,사북,서,신북,하남
시/군/구	기장군/울주군	영광군/고창군	경주시	울진군	춘천시/화천군
광역시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가. 평가산식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나. 노무비의 적정성 평가

- 노무비 적용기준을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노무비 반영비율 = 노무비 / 입찰서의 공급가액
- 배점

노무비 반영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배 점	4	3	2

다.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적정성 평가

- 적용기준을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 배점 (각각 개별 적용)

구 분	기준율 대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100% 이상	80% 이상	80% 미만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100% 이상	85% 이상	85% 미만
배 점	1	2	1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이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
 - * 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의 합
2. 노무비율,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입찰서에 첨부(내역입찰의 경우) 또는 적격심사시 제출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하며, 산출결과(백분율)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3항 각 표기된 자리의 다음에서 반올림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하기요율은 예시이며, 입찰공고시 명시요

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34.18%	5.828%	4.1%	12%

별지 ㉔ [지역공동]

시/군/구 지역업체 와 공동수급체 구성

구성원의 당해지역 계속 소재기간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기간별 배점	3	2	1	0.5

주) 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에 대한 평가방법

1.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이하 "지역업체"라 함)의 당해지역 소재기간을 평가한다.

※ 입찰공고시 구체적 시군 명시하기 바람, 건설현장이 발전소 등 주변 반경 5km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적용

- 지역소재 기준일은 공사업(당해업종 구분없음) 사업자등록일(소재지)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업체 단독(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3. 지역업체의 참여지분 합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미준수시 0점처리한다.

4. 면허보완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5. 다수 지역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평가하되 3점을 한도로 한다.
단, 3년 이상된 지역업체가 30% 이상 지분참여시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① 구성원별로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구성원수 2개사로 제한할 경우에는 삭제바람

- 당해업체 적용 기간별 배점 × 당해업체 참여금액(또는 지분)/지역업체 전체금액 (또는 지분)

② "①"의 합계점수에 아래 해당 승수를 곱하여 최종 평점한다.

입찰공고시 요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참여 구성원중 지역업체수별 승수율 (%)		
	1개사	2개사	3개사
4개사 이내	100	115	120
3개사 이내	100	120	
2개사 이내	100		

산출예시) 4개사로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한 경우

회 사 별	3년소재한 A사	2년소재한 B사	1년소재한 C사	계
소재기간별 배점	3	2	1	-
참여금액	8,000	1,000	1,000	10,000
점수계산	2.40	0.20	0.10	2.70
할증승수				1.2
환산평점	산출점수는 3.24점이나 배점한도 적용함 →			3.00

지역소재 영업기간

□ 평가기준

평가요소	일반건설공사	30억 미만~2억 이상	2억 미만
	그 외 공사	3억 미만~1억 이상	1억 미만
주된 영업소	5년 이상	2.0	1.00
	4년 이상	1.9	0.95
	3년 이상	1.8	0.90
	2년 이상	1.6	0.85
	1년 이상	1.5	0.80
	1년 미만	1.4	0.70
대 표 자	5년 이상		1.00
	4년 이상		0.95
	3년 이상		0.90
	2년 이상		0.85
	1년 이상		0.80
	1년 미만		0.70

□ 평가방법

1. 지역별 적용범위

지 역 구 분	일반건설공사	그 외 공사
발전소 주변 반경 5km이내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30억원 미만~2억원 이상	3억원 미만~1억원 이상
발전소 주변 반경 5km이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	2억원 미만	1억원 미만

2. 당해 지역에 계속 소재하는 기간에 따라 평점

가. 지역소재 기준일은 공사업(당해업종 구분없음) 사업자등록일(소재지)을 기준으로 한다.

나. 대표자는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된 지역주민으로서 대표자로 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속된 전임 대표자의 지역거주기간은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로 분리평가시는 해당부분에 적용)

라. "주된 영업소 소재기간"을 평가함에 있어 2011.12.31까지 한시적으로 "나"항의 대표자 거주기간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다.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 평가기준

1. 관계법령에 따른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일반건설공사에 한정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인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따른다.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되 구성원 중 1개업체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수행능력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수행실적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2.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

가. 기술자보유상황 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을 평가한다.

라.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모두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입찰가격 평가는 수급체 단위로 시공비율 구분 없이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미만인 자.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소재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²⁾는 일정기간수행실적,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시군구 지역제한경쟁이거나 시군구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 금액 : 일반건설공사/그 외 공사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별	국제입찰대상 미만 추정가격 70/6억원 이상	추정가격 70/6억원 미만 추정가격 30/3억원 이상
10% 이상 15% 미만	5%	
15% 이상 20% 미만	6%	2%
20% 이상 25% 미만	7%	4%
25% 이상 30% 미만	8%	6%
30% 이상 35% 미만	9%	8%
35% 이상	10%	
35%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45% 미만		12%
45% 이상 50% 미만		14%
50% 이상		16%

④ 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평가한다.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당해 조항은 전력사업의 수용성 증대 및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므로 당해 시군구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당해 지역업체도 가산비율 적용이 필요하다면 당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신청서

○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귀사 공사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기준에 저촉되면 귀사 동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별지서식 2)
2. 공동수급체 현황표 (별지서식 3) 및 공동수급협정서 (필요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업면허증, 입찰참가자격요건 사본
4. 관련협회 발급 실적확인서 (공사실적증명서)
5. 경영상태 관련 증빙서류
6.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7. 하도급관리계획서 (별지 ㉓, 필요시)
8. 입찰금액산출내역서 (내역입찰외는 심사대상자에게 공내역서 제공함)
9. 기술자 보유 확인서 (필요시)
10.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11. 기타 당해 적격심사와 관련된 서류
12.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한국외 언어시)
13. 기타 필요서류

※ 붙임 1, 2, 8외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공고번호	
입찰일시	
공 사 명	
공사기간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 입찰자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인)
공사구분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3. 담당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직위:)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행 능력	일정기간 수행실적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인력조달가격 적정성				
지역업체와 공동수급구성				
지역소재 영업기간				
입찰가격 평가				
합 계		100		
수행능력 결격여부				
총 평 점		100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공사명		입찰일시	
-----	--	------	--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분		구성원(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① 회사명				
② 대표자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 그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 시공비율(%)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시공능력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⑦ 업종 등	토, 건 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 동일 공사실적	규모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금액			
⑨ 유사 공사실적	규모			
	금액			
⑩ 연간 실적금액		천원	천원	천원
⑪ 기술자보유 평가 (경력, 일반, 시공지원)				
⑫ 경영상태 평가				
⑬ 시공여유율				
⑭ 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⑮ 신인도 등록내용				
⑯ 기타사항	전화번호			
	주소			
	작성자			

주)

1. 공동이행방식 및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4.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I.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시 공 자 (대 표)	회사명		업종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계 약 금 액		
	착공일자		시공누계금액		
	준공일자		미 시공금액		
계약의 종류	원도급(), 하도급(), 기타() ※해당란에 ○표				
II.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인)		(인)	(인)	
시 공 금 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업종(등록)별 00년도공사내용					
업종별 00년도 시공금액	00업종				
	00업종				
	00업종				
III. 불 임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함					
200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